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

- 1.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종계 및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•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축산법 시행령('18.7.10 개정, '18.9.1 시행) 및 시행규칙('18.7.12 개정, '18.9.1 시행)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. 각 시·도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의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해설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'18.7.25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, 농촌진흥청에서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시·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지도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(2018.7.10) 1부
 - 2.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(2018.7.12) 1부
 - 3. 해설 필요사항 작성 양식 1부. 끝.

노리주사^ 농림축산식품부장과 지(47점) 조아에지 보다 (2010)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8부), 중앙행정기관(17청), 중앙행정기 기관(농을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각 시도(나 01-18 · 중앙행정기관(6위원회), 산하기관(농병), 소속 !런단체 . 농협경제지주

협조자

시행 축산정책과-2940 (2018. 7. 12.) 접수

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326 팩스번호 044-868-3966 / yijaes3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